

2022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I. 총괄

-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은 저소득시민의 자립기반 조성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9조에 따라 2002년부터 서울시가 조성하여 운용 중임.
-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의 총 운용규모는 124억 7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5억 8천 2백만원 증액(14.5%)되었음¹⁾.

〈2022수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계	12,476	
일반회계전입금	0	
민간융자금회수	6,140	이자포함
예치금 회수	6,151	
공공예금 이자수입	105	
기 타 수 입	80	

〈2022지출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계	12,476	
비용자성사업비	4,800	주택임대료 보조
융자성사업비	6,140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예치금	1,536	
예탁금	0	
기 타 지 출	0	

▶ 기금조성내역

- 2022회계연도 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백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포함) 수입 61억 4천만 원, 기타 그 외 수입 8천만 원으로 그 밖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은 없으며, 예치금 회수액 61억 5천 1백만 원을 제외한 순조성액은 63억 2천 5백만 원 규모임.

1)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의 운용규모는 108억 9천 4백만원임.

〈기금조성내역〉

(단위: 백만원)

항 목	'22년 수입계획(안)	'21년 수입액	증 감	증감률(%)
계	12,476	16,951	△4,475	△26.4
공공예금 이자수입	105	117	△12	△10.3
민간융자금회수(이자포함)	6,140	6,943	△803	△11.6
기타회계 전입금	0	1,991	△1,991	△100
기타 그 외 수입	80	40	40	100
예치금 회수	6,151	7,860	△1,709	△21.7

▶ 기금사용계획

- 기금은 총 2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48억 원,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융자 61억 4천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3천 6백만 원을 여유자금으로 예치할 계획임.

〈기금사용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22년 지출계획(안)	'21년 지출액	증 감	증감률(%)
계	12,476	16,951	△4,475	△26.4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4,800	5,000	△200	△4
임대보증금 융자	6,140	5,800	340	△5.9
여유자금 예치	1,536	6,151	△4,615	△75

II. 수입 및 지출 세부내역

- 2022년도 기금 수입은 총 124억 7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4억 7천 5백만원(26%) 감소하였는데,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19억9천1백만원 ⇒ 0원)과 민간융자금회수(△8억3백만원), 예치금 회수액(△17억9백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세부적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백만 원, 이자를 포함한 민간융자금 회수액 61억 4천만 원, 그 외 수입 8천만원으로 구성되며, 예치금 회수액은 전년대비 17억 9백만 원 감소한 61억 5천 1백만원임.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22 수입계획(안)	'21년 수입액	증감액	비고(증감 사유)
계	12,476	16,951	△4,515	
공공예금 이자수입	105	117	△12	예치금 감소에 따른 이자 감소
민간융자금회수(이자포함)	6,140	6,943	△803	
기타회계 전입금	0	1,991	△1,991	일반회계 전입금 삭감
기타 그 외 수입	80	40	40	주택바우처 파오납 반납금
예치금 회수	6,151	7,860	△1,709	전년도말 예금 잔액

- 지출규모는 수입규모와 동일한 124억 7천 6백만 원으로 주택임대료 보조 지급 감액(△2억원) 외 대부분 여유자금 예치금 감소(△46억 1천 5백만 원)에 기한 것임.

- 세부적으로는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서울형 주택바우처) 48억원,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용자지원 61억 4천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3천 6백만 원을 여유자금으로 예치할 계획임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22 지출계획(안)	'21년 지출액	증감액	증감 사유
계	12,476	16,951	△4,475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4,800	5,000	△200	평균90천원×월평균약4,300가구×12월 + 지원금상향
임대보증금 용자	6,140	5,800	340	- 계약금 용자 : 2,000백만원 - 잔금 용자 : 540백만원
여유자금 예치	1,536	6,151	△4,615	'22년 말 기금 잔액

Ⅲ. 검토의견

- 2022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은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과, 임대보증금 융자사업에 사용될 계획임.
-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사업(붙임-3 참조)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 및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시민에게 ‘서울형주택바우처 사업²⁾’을 통해 월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비로 4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4.2%(2억원) 감소된 규모임.
 - 이 사업의 지원대상 가구수는 2015년 이후 1만 가구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2018년 이후에는 감소하였는데, 이는 ‘18.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선정 기준 완화로 주거급여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주거급여 대상과 주택바우처 지급 대상의 기준 차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2019년 7월부터 주택 외 ‘고시원’ 거주가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하였음에도, 주택바우처 지원대상은 감소하였는바, 주거빈곤계층 지원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 모니터링과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해보임.
 - 또한 올해 10월부터 서울형 주택바우처 유형 중 하나인 특정바우처를 세분화하여 아동주택바우처 사업을 신설하고, 주택바우처 지원대상가구내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을 경우 1인당 4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 시작했음.
 - 아동주택바우처 사업 예산은 기 주택바우처 예산범위 내에서 통합운용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그간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가구가 줄어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현상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붙임-6 참고)

2) 민간 임대주택 및 준주택에 거주하는 월세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월 5만원~7.5만원의 주택바우처를 차등 지원(자치구-매월)하는 사업으로, 이와 병행하여 시설외소자의 초기 주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월 12만원~15만원 규모로 특정바우처(SH공사-분기)를 지원하고 있음.

〈주택바우처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최종예산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지원 실적
2016	7,200	-1,400	5,800	5,728	72	8,705가구
2017	7,200	-	7,200	6,659	541	10,270가구
2018	7,600	-	7,600	6,574	1,027	6,975가구
2019	7,650	-2,650	5,000	3,918	1,082	5,797가구
2020	6,000	-	6,000	4,092	1,908	4,082가구
2021. 10.	5,000	-1,000	6,000	3,341	1,659	4,351가구

-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용자”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임대보증금 용자 지원과, 이사시기 불일치 발생 시 임대차계약 종료 전 미반환 보증금을 단기대출하는 사업을 포괄하고 있는데 두 사업의 2022년도 예산은 금년 대비 3억 4천만원 증액되었음.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용자 예산편성 현황〉

과목구분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계	6,140백만원	5,800백만원
임대보증금 용자지원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용자)	3,600백만원 = 12백만원*300가구	3,000백만원 = 12백만원*250가구
미반환 보증금 단기대출 (전월세보증금 순환기금)	2,540, 백만원	2,800백만원

- 임대보증금 용자지원 사업(붙임-4 참조)은 작년까지 가구당 상한 1천만원까지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1천 2백만원으로 상향지급하고 있으며³⁾, 2022년에는 올해보다 34가구 증가한 300가구를 지원할 예정임.

〈최근 5년간 임대보증금 용자지원사업 예산 및 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별	예산액	지원가구	지원 금액	집행률(%)	비 고
2022	3,600	300 가구	3,000	100	계획
2021	3,000	266 가구	2,400	80	10월 기준
2020	4,000	302 가구	2,674	66.9	
2019	3,000	328 가구	3,007	100.2	
2018	3,000	338 가구	2,985	99.5	
2017	3,000	337 가구	2,983	99.4	
2016	2,700	272 가구	2,486	92.1	

3) 상한액을 1,200만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공급 평형이 가장 작은 원룸의 경우 용자지원 가능액(임대보증금의 70%)이 11,778천원으로, 이를 최저기준으로 보고 최저기준은 보장해주려는 취지임.

- '전월세보증금 순환기금(이사시기불일치 대출4)' 사업(붙임-5 참조)의 2022년도 예산은 전년도(28억원)에 비해 2억 6천만 원이 감액된 25억 4천만 원이며, 총 43세대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이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중 공급규모가 큰 장기전세주택에서 발생하는 대출이 전체 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장기전세주택의 신규 공급이 '17년부터 급감한 이래 '20년 대규모 신규 공급(약 2천세대)이 발생함에 따라 기금의 지출도 일시적으로 늘어났으나, 올해 집행실적은 4세대 3억 4천 6백만 원에 그쳤음.

〈최근 5년간 임대보증금 용자지원사업 예산 및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		2020		2021(10월)		2022(안)	
	실적	집행액	실적	집행액	실적	집행액	계획	예산안
미반환 보증금 단기대출	28세대	3,000	47세대	1,994	4세대	346	43세대	2,800

- 이사시기불일치 대출이 금년도 4건, 3억 4천 6백만원의 낮은 집행률을 나타낸 것은 최근 전세가격이 급등하며 대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에는 전세가격 변동을 감안한 면밀한 제도설계 및 수요 예측이 필요해 보임.
- 또한 '20년 이후 주거복지센터 운영비가 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의 대상은 두 개 사업에 불과한 상황이나,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17, '20) 발표 등 주거복지 수요는 증가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기금의 적극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4) 세입자가 부득이 계약종료 전에 이사하는 경우에 일시적 공백 기간이 발생하여 이사를 가지 못하는 세입자에게 기존 보증금을 기초로 단기적으로 대출(계약금, 잔금)해주는 사업

담 당 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한 승 윤 (前)입법조사관 윤 은 정
연 락 처	02-2180-8207
이 메 일	syhan@seoul.go.kr

【붙임-1】 연도별 융자성·비용자성 사업계획 및 실적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18년	<p><융자성> - 17,50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보증금 순환기금 운용 (14,500백만원) ○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3,000백만원, 300가구) <p><비용자성> - 10,595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원 (7,600백만원, 10,000가구) ○ 주거복지센터 운영 (2,995백만원, 26개 중앙1 지역25) 	<p><융자성> - 6,462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보증금 순환기금 운용 (3,462백만원, 29건 지원) ○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3,000백만원, 338가구) <p><비용자성> - 9,403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원 (6,574백만원, 6,975가구) ○ 주거복지센터 운영 (2,829백만원, 26개 중앙1 지역25) 	56.5%
2019년	<p><융자성> - 8,00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보증금 순환기금 운용 (5,000백만원) ○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3,000백만원, 300가구) <p><비용자성> - 9,003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원 (5,000백만원, 6,000가구) ○ 주거복지센터 운영 (4,003백만원, 26개 중앙1 지역25) 	<p><융자성> - 6,816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보증금 순환기금 운용 (3,816백만원, 157건 지원) ○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3,000백만원, 328가구) <p><비용자성> - 6,743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원 (3,918백만원, 5,797가구) ○ 주거복지센터 운영 (3,408백만원, 26개 중앙1 지역25) 	79.7%
2020년	<p><융자성> - 9,00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보증금 순환기금 운용 (5,000백만원) ○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4,000백만원, 400가구) <p><비용자성> - 6,00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원 (6,000백만원, 5,500가구) 	<p><융자성> - 4,668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보증금 순환기금 운용 (1,994백만원, 47건 지원) ○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2,674백만원, 302가구) <p><비용자성> - 4,092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원 (4,092백만원, 4,082가구) 	58.4%
2021년 (10월 말 현재)	<p><융자성> - 5,80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보증금 순환기금 운용 (2,800백만원) ○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3,000백만원, 250가구) <p><비용자성> - 5,00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원 (5,000백만원, 4,600가구) 	<p><융자성> - 2,746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보증금 순환기금 운용 (346백만원, 4건 지원) ○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2,400백만원, 266가구) <p><비용자성> - 3,341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원 (3,341백만원, 4,082가구) 	56.4%

출처: '20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를 기초로 보완·작성

【붙임-2】 최근 4년간 기금 운용 현황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 입	합 계	23,841	100%	18,043	100%	17,268	100%	16,951	100%
	전입금	4,500	18.9	5,850	32.4	4,400	25.5	1,991-	11.7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이자포함)	6,774	28.4	4,097	22.7	8,710	50.4	6,943	41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12,372	51.9	7,976	44.3	3,902	22.6	7,860	46.4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168	0.7	80	0.4	84	0.5	117	0.7
	기타수입	27	0.1	40	0.2	172	1	40	0.2
지 출	합 계	23,841	100%	18,043	100%	17,268	100%	16,951	100%
	비용자성사업비	9,403	39.4	7,326	40.6	4,082	23.7	5,000	29.5
	융자성사업비	6,462	27.1	6,816	37.8	5,326	30.8	5,800	34.2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7,976	33.5	3,902	21.6	7,860	45.5	6,151	36.3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출처: '20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를 기초로 보완·작성

【붙임-3】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사업개요

○ 사업 근거

- 주거기본법 제15조(임대료 보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제3장(주거지원계정자금의 대출 등)

○ 지원 내용 :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

○ 지원 금액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 3월까지	50,000원	55,000원	60,000원	65,000원	70,000원	75,000원
'20. 4월부터	80,000원	85,000원	90,000원	95,000원	100,000원	105,000원

○ 지원 대상 : 아래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

- ①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소액보증금 기준 1억1천만원 이하 가구
- ③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재산가액 1억6천만원 이하 가구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60%	1,054,316원	1,795,188원	2,322,346원	2,849,504원	3,376,663원	3,903,821원

○ 아동 주택바우처 지원사업(신설)

- 사업 목적 : 아동 주거빈곤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하여 주거안정 도모
- 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 1인당 월 4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
- 지원 기간 : 만18세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속 지원

【붙임-4】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개요

- 관련법령: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시행규칙 제11조
- 대출재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 사업비: 30억 원(12,000천 원 x 250가구)
- 지원대상

-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예정자(영구임대·장기전세주택 제외)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등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저소득자로 인정한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저소득 한부모 세대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1호5)에 따른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5. 2001년 3월 14일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안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자 중 철거민

○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의 70%까지 대출(상한액: 1천 2백만 원)
- 연이율 2%로 10년 간 균등분할 상환(연체료: 연 8.5%)

○ 신청절차: 임대차 계약 체결 후 SH공사 임대부로 신청

○ 추진방법: SH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20. 6. 11.~'23. 6. 10.)

※ 사업비는 분기별 교부가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조정가능(매월 20일 정산)

5)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붙임-5】 이사시기 불일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사업 개요

□ 대출대상과 신청자격

○ 계약금 대출

- SH, LH, 서울리츠 등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자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임대 주택에 당첨된 자

○ 잔금 대출

- 민간 (신)임차주택 보증금 3억 원 이내 임대계약 체결자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자(보증금 한도 없음)

□ 대출한도

○ 계약금 대출

- 공공임대주택 계약금의 90% 이내(최고한도 5천만 원)

○ 잔금 대출

- (구)임차보증금 100%와 (신)임차보증금 80% 중 적은 금액(최고한도 1억 8천만 원)

□ 대출기간

○ 계약금 대출

-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종료일(연장불가)

○ 잔금 대출

- 기존 임차주택 계약종료일까지가 원칙이나, 보증금 수령 지체 시 최대 2년까지 가능(수시 임대차조사 하여 보증금 반환여부 확인)

□ 대출금리 및 수수료 : 고정금리 1.8%(중도상환수수료 및 보증보험료 없음)

□ 대출소요기간 : 신청 후 약 2~3주 소요

□ 기타 조건

- (신)(구)임차주택이 등기가 된 건물로서 주택(아파트, 연립, 빌라,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되어야 함
- (신)(구)계약 당사자가 동일해야 하나, 부부까지 동일인으로 분류

□ 대출 지원이 안되는 경우

- 단독세대주(1인 가구), 기 전세자금대출 보유, 무소득, (구)임대주택 권리침해(가압류), 시 외 지역 전출자 등

【붙임-6】 아동주택바우처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장(주거지원계정자금)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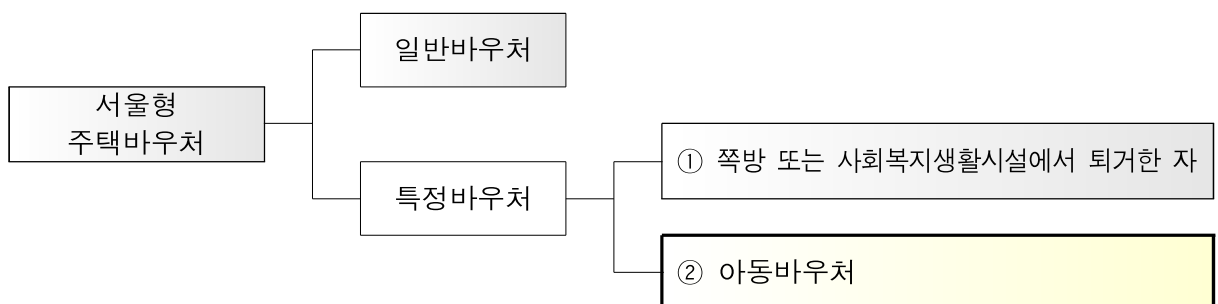
- 추진목적: 아동 주거빈곤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하여 주거안정 도모
- 지원대상: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가구 내 만18세 미만 아동
 - ①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 ② 임대보증금 1억1천만원* 이하 가구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소액보증금 기준
 - ③ 소득평가액 60%이하, 재산가액 1억6천만원 이하 가구
 - ④ 만18세 미만* 아동 * 「아동복지법」 상 아동의 나이 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 이상
기준중위소득 60%	1,096,699원	1,852,847원	2,390,370원	2,925,774원	3,454,424원	3,977,192원

- 지원기간: 지원대상(만18세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속 지원

□ 운영계획

- 운영방법: 특정바우처 내 아동주택바우처 신설
 - 사업예산은 주택바우처 예산 6,000백만원 내에서 통합 운용
 - 기존 특정바우처는 선정기준·지원기간·지원금액 등 운영방식 유지



○ 지원금액: 1인당 40천원

《예시1 : 보호자가 1인인 가구의 지원금액》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 이상
보호자(일반)	80천원(1인)	80천원(1인)	80천원(1인)	80천원(1인)	80천원(1인)
아 동(특정)	40천원(1인)	80천원(2인)	120천원(3인)	160천원(4인)	200천원(5인)
합 계	120천원	160천원	200천원	240천원	280천원

《예시2 : 보호자가 2인인 가구의 지원금액》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 이상
보호자(일반)		85천원(2인)	85천원(2인)	85천원(2인)	85천원(2인)
아 동(특정)		40천원(1인)	80천원(2인)	120천원(3인)	160천원(4인)
합 계		125천원	165천원	205천원	245천원